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2 선고 2021나3721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2 선고 2021나3721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6 선고 2019가단5037659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

담당변호사 이재민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

담당변호사 최기영, 황선하

변론종결 2022. 10. 25.

판결선고 2022. 11. 22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19가단5037659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A(제1심 공동피고)과 공동하여 65,251,090원 중 65,250,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0. 14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‘피고 B는’을 ‘피고 B의 시어머니인 J은’으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‘체결한 후,’ 다음에 ‘J을 통해’를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제5쪽 8행1)의 ‘19호증’ 다음에 ‘, 을 제7 내지 12호증’을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제7쪽 15행의 ‘30분 이내에’ 다음에 ‘시어머니인 J을 통해’를 추가한다.○ 제1심판결 제7쪽 16행의 ‘준 점, ③’ 다음에 ‘피고 B와 J의 관계, 비정상적인 이중적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,’를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곤, 판사 이흥관, 판사 윤동연

1) 글상자 부분을 제외한 행을 의미한다.